

# 시설관리위원회 운영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시설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기능)** 위원회는 학교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연구, 심의한다.

- ① 건물의 유지관리 및 내부 공간 활용에 대한 용도배정.
- ② 전기, 통신, 건축, 급·배수, 냉·난방, 환경, 조경 시설에 관한 사항.
- ③ 기타 시설에 대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.

**제3조 (구성과 임기)** ① 위원회는 총무처장, 교무처장, 신학대학원장, 기획처장, 학생처장, 총무과장, 기획과장, 장애학생지원센터직원, 총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한다. 단, 학생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학생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<개정 2017.9.28.>

- ② 임기는 총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.<개정 2017.9.28.>
-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**제4조 (간사)**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총무처 시설관리 담당직원으로 한다.<개정 2017.9.28.>

**제5조 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**제6조 (회의록)**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·날인 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7조 (시행)**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 시설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본다.
- ③ 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은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